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재산 편법사용 등 부패신고 관련 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16. 3. 3.(목) ~ 3. 4.(금) / 2일 간
- (조사인원) 감사담당관실 ○○○ 사무관, ●●● 주무관 / 2명
- (신고내용) (권익위→ 문체부 이첩, '16.1.27) 기관재산 편법사용, 자체수익 상실 대가성 수익계약
 - 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KCDF 갤러리 3층 공간 일부를 기관 자체 수익을 위해 임대운영 하여야 함에도,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과) 서울 사무실로 사용, 용도(건축물대장상-일반음식점)에 맞지 않은 운영으로 기관이 얻을 수익을 상실함
 - 용도 변경 후 문체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것이 타당함
 - 문체부는 우월적 지위로 진흥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진흥원장은 문체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재산을 편법으로 사용, 기관 수익을 상실케 함
 - ② 문체부는 진흥원으로부터 사무실 사용편의를 제공받고 연구용역(3.6억원)을 공개경쟁 절차없이 진흥원과 수익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계약법을 위반함

□ 조사결과

1. 용도 변경 후 문체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1-1. 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 용도를 변경하여야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한정식)」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건축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종류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요건과 관할 구청의 지구단위 계획상 지정용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
 - 1-2. 진흥원은 문체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가 아닌지
 - 진흥원 정관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르면 기본재산 임대시에는 이사회의 결 및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4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조항으로 상당한 대가없이 기관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문체부의 국가브랜드 개발사업 사무공간 조성 당시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던 국가상징체계 개발사업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단일화된 추진 조직체계 및 관계 규정마련, 연구용역 사업 예산을 동일 사업단위에서 집행, 종합홍보용역 공동추진 등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진흥원은 건물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문체부와 공식적인 사무공간 사용협의를 물론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 및 문체부 장관의 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 결과, 진흥원 정관 제17조(이사회 의결사항) 제2항 에 따라 이사회의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통해 ‘문체부의 진흥원 사무공간 사용’ 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기회를 상실하여, 진흥원 목적 및 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방식)과 해당 사무공간 사용 면적에 따른 관리비용 적용여부 등 전반적인 기본재산 관리운영상 마땅히 검토 되었어야 할 제반사항을 소홀히 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1-3. 문체부는 우월적 지위로 진흥원 재산을 부당 사용하고, 이를 위해 진흥원장이 기관재산을 편법사용 했는지 여부

- 문체부(국제문화과)는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상징체계 개발사업과 관련성을 감안하여 ‘15.1월경 진흥원 3층 갤러리 로비 공간 일부를 사무 공간으로 조성하고, 진흥원 관계자와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 개발 사업을 위한 회의와 현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15.2.23. 예규 제 35호)」 제정 및 「국가브랜드·국가상징체계개발추진단」 구성(‘15.3.16.) 등 단일한 사업추진 근거 및 전담 조직체계를 갖추고, 관련 연구용역 사업 예산을 동일 사업 단위에서 같이 운영토록 하였으며 「국가브랜드 및 정부상징체계 종합홍보용역(’ 15.5.12.~ ‘15.12.31.)」 등을 공동 추진하였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가브랜드 및 정부상징체계 개발사업간 동일 공간에서의 협업 필요성 등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문체부가 관리·감독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진흥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거나 진흥원장이 문체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2. 문체부가 사무실 사용편의 대가로 진흥원과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는지

-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개발 방향수립 및 시안개발연구」 용역사업은 앞서 추진됐던 「2014년 국가상징체계개발 기초 자료조사」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시각예술디자인과)의 정책 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15.3.25.~3.27.)에서 연구자를 선정하고,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문체부가 공개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 사용편의 대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

- 진흥원은 문체부(국제문화과)의 사무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소유재산의 임대 등 기관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방식(유상, 무상 포함), 관리비용의 산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과 관련하여 기관 ‘엄중경고’ 조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 기본재산 운영·관리 철저 촉구(주의)
- 기 조성된 문체부(국제문화과) 사무공간 관련, 진흥원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통해 임대차 계약 등 제반사항을 의결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통보)